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기업의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재정부담 등 관내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7. 7 ~ (예산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20개사(기업 신청 초과시에도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 및 유통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주요품목 : 수출제품 전 품목(50만원이상부터 신청가능)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국가 : 제한 없음
- 지원항목 :

· 국제운임(INCOTERMS상 C조건 또는 D조건)

국제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INCOTERMS 조건으로 계약 및 지급한 경우(수출신고필증 49번 항목에 C 또는 D조건인 경우)

(현재 INCOTERMS 2020이 적용되나 INCOTERMS 2000 등 이전버전을 적용하여도 무방)

· 국제운임 [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국내 내륙운송료 지원불가)

· DHL, FEDEX등 특송업체를 통한 Door to Door 운송 물품 중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료

4. 신청기간 : 2025. 07. 07 부터 선착순 모집

5. 선정방법

-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선착순으로 물류비 지원 신청
-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 및 물류비 지원

7. 지원방법

- 지원 신청 : 기업이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등을 선지급 후 신청
- 보조금지원 : 수출 및 물류비 지급 사실이 확인된 업체 선착순 지원

* 수출신고필증, 국제운임 및 창고보관 영수증 등 제반서류 확인

[표 : 지원대상 목록]

연번	지원대상		세부항목	비고
1	국제운임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2	수입국 창고료	보관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보관료 및 작업료의 합계액 지원
		작업료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합계액	
3	내륙운송료		현지 내륙운송비	증빙가능 비용지원
4	특송업체, EMS 운송료		DHL, FEDEX 등 운송료 및 할증료 EMS를 통한 운송료 및 할증료	수출신고필증 필수 특송업체 등 운임, 할증료 등 지원

②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및 유통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DHL, FEDEX 또는 우체국 EMS 등을 통한 견본품 수출시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③ 신청 제외대상

- (이중수혜 금지)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 제출서류가 **허위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에 발급자의 **정당한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는 경우**
- 기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입증서류 제출, 중복수혜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해당사업 3년간 참여 제한

④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5. 07. 07 ~ 2025. 07. 1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인천시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접수

※ <http://www.bizok.incheon.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신청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파일명 : 번호_서류명_기업명(예시 : 1. 신청서_가나다화장품)
- 파일형식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변환후 병합하여 첨부
 - 서식 1~4는 인감 또는 서명 날인 필요

⑤ 지원금의 지급

- 지원방식 : 지원기업이 물류비를 선 집행하고,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서류 검토 후, 사후정산
 - ※ 지원금액은 백원단위미만 절사 후 지급 예정

※ 유의사항

- 상기 신청서류 외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후 금액이 다를 경우, 검토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요청 후 2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후순위로 밀리며,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아래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해당사업 3년간 참여제한
 - ①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중복 수혜 사실 발견 시

◎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문순덕 부장 (☎032-810-2824)

7 신청서류

- 일반수출

<p>공통 서류</p>	<p>1)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지원금 신청청구서 1부(서식2)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1부(서식3)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 “0” 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7) 통장사본(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한 수취인만 가능, 개인 이름 명의통장은 불가)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p>
<p>개별 서류</p>	<p>9) 2025년 수출신고필증 10) 선하증권(B/L) 등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1) 송품장(Commercial Invoice) 1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3) 국제운임 지급증빙 : 운임인보이스(거래명세서) 수출자가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수취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해상·항공운임, 할증료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것 14) 운송료 지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5) 운송료 이체확인증 16) 창고료 지급증빙 창고료가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창고료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창고료 이체확인증 17) 내륙운송료 지급증빙 현지 내륙운송료의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운임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내륙운송료 이체확인증</p>

- 특송, EMS(우체국) : 수출신고필증 제출 필수

<p>공통 서류</p>	<p>1)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지원금 신청청구서 1부(서식2)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1부(서식3)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 “0” 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7) 통장사본(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한 수취인만 가능)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p>
<p>개별 서류</p>	<p>9) 특송 또는 EMS 운송장(참고로 운송장 번호, 중량, 요금 등이 기재) 10) 송품장(Commercial Invoice) 11) 특송업체 및 우체국에서 발행한 청구내역(우체국에서 발생한 후납감액내역서) 12) 특송업체 및 우체국에서 발행한 지로 및 입금증(카드결제의 경우 카드대금 청구서)</p>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